

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안내

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기술인력(1명)을 확보하여야 함(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)

-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·저장업 전부
-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의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
-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

1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(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)

자격
기준

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(택1)

- 기술사, 기능장
- 석사 + 경력 3년
- 기사 + 경력 5년
- 산업기사·기능사 + 경력 7년

-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
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(택1)

- 기술사, 기능장
- 석사 + 경력 3년
- 기사 + 경력 5년
- 산업기사·기능사 + 경력 7년

※ 자격증 종류 등 세부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참고

신청
자격

- 기술인력 기준 중 학력(석사이상) 또는 자격(기사, 산업기사·기능사)을 갖춘 자
- 유해화학물질을 5년 이상 취급한 자
-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
-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

- (예시)
- ① 환경·위험물·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경력이 7년 미만인 자
 - ② 자격증은 없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 - ③ 대기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경력이 없는 자 등

신청
방법
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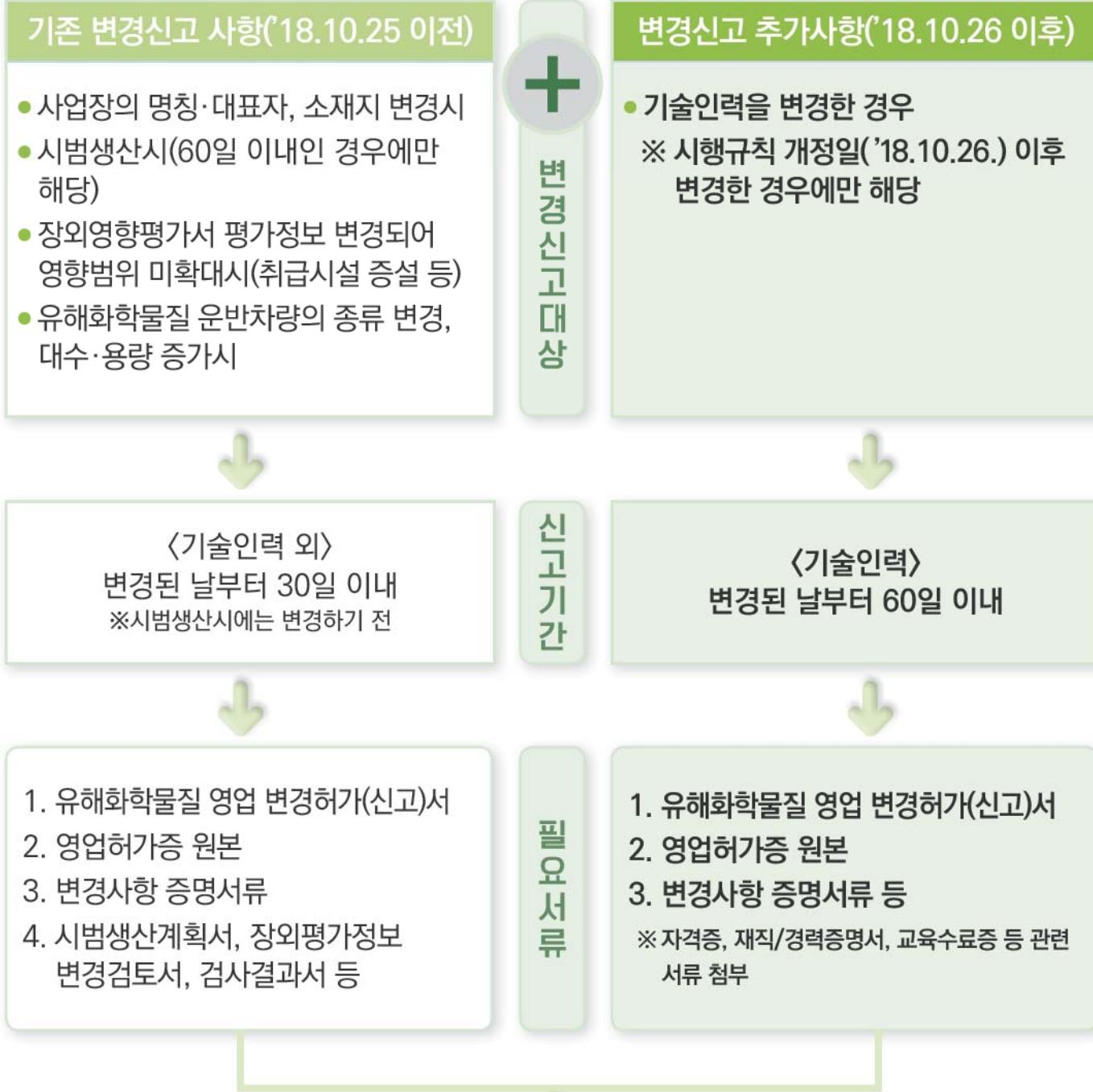
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(<http://edunics.me.go.kr/>)으로 신청

- 교육시간 : 無 경력과정(7일, 56시간), 경력과정(4일, 32시간)
- 교육비 : 44,000원/일
- 수료증발급 : 교육이수 후 평가를 통과한자
- 교육내용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참조

■ 기술인력 교육과정수료자의 자격 유효기간 : ~ 2023.12.31.까지(만료 전에 연장여부 검토)

2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화

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“영업허가 변경신고”를 60일 이내 이행하여야 함(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, '18.10.26.시행)



- 제출기관 : 유역·지방환경청(화학안전관리단) 또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

(위반시) 과태료 – (1차)600만원/ (2차)800만원/ (3차)1,000만원